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155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4. 6.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21. 5. 25. (피고 C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0,418원 및 그 중 21,539,435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17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17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회사와 2013. 11. 5.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D, 보증금액 45,000,000원(그 후 21,25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11. 4.(그후 2020. 10. 30.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던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회사가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7. 소외은행에 21,539,4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을 위해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160,983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1. 25.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17699호 및 제177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1. 25.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회사,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회사,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21,700,418원(= 대위변제잔액 21,539,435원 + 대지급금 160,98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21,539,4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C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약 2개월 후인 2020. 1. 31. 폐업하였고, 피고회사가 2020. 3. 1.부터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2020. 5. 27. 소외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사촌동생인 피고 B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B가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청도군 E 전 2850㎡
2. 경상북도 청도군 F 입야 95㎡

